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 자료

□ 추진 배경 및 경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 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 내용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이용자수	서비스 종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정

*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
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안 별표1)

<법률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담 의무>

1.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 (제44조의12⑥)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제44조의12②)
3.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제44조의12제3항)
4.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6개월에 1회 이상)(제44조의14①)

-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게재자 =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③「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④「인사 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 ⑤「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⑥「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대표자 ⑦「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규정

-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신고시 기재사항> ①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③ 증빙 자료 ④ 신고자의 연락처 ⑤ 신고자의 성명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안 제35조의8제1항)

국제적 원칙	사실확인 활동 기준	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규범(고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허위 조작정보), 보고서 공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
- (투명성센터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법률 제44조의17제2항]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시행령]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부과대상 =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업으로 하는 자	정보게재수	판결이 확정된 정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규정

과징금 = 기준금액 ×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 감경 × 부과과징금의 결정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

- (기타) ①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정보제공청구 절차·정보제공 절차, ③보고서 공표 방식, ④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⑤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의 위탁 절차 등 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사례별 질답

□ 사례

< 사례1. 사적 권익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개인적 법익 침해)>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랙카 A씨는 연예인 홍길동씨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튜브로 방송하였고, 해당 영상은 단시간에 연예가 뉴스 등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홍길동씨는 이미지 타격과 동시에 방송활동이 끊기는 등 수익 활동에 큰 문제가 생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 사례2. 감염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피해 구제(사회적 법익 침해)>

새로운 질병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보급, 격리 정책 등 긴급 대응책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했으나,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B씨는 최근 대규모 □□국 관광객이 방문한 ○○시가 감염병의 최초 발원지이며,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방송하였다.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질병청은 감염병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유튜버 B씨를 경찰청에 고발하고 구글 유튜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질문 및 답변>

- (질문 1)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하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 신고이유,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게재자가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문 2)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받은 허위조작정보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삭제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실확인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통보시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 (질문 3) 신고받은 내용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될 경우,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 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된 정보가 회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 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의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확인단체를 통해 사실확인 후 제공자의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함

- (질문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제공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5)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와 제공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②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③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④분쟁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함

→ ⑤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⑥분쟁조정부의 분쟁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질문 6) 허위조작정보 피해자인 홍길동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이버렉카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이버렉카 A씨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홍길동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홍길동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였고 홍길동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홍길동은 사이버렉카 A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또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 시 법원은 같은 법 제44조의10 제2항에 따른 허위성, 의도성 또는 목적성, 침익성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5배 범위 내에 가중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만약,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질문 6-1)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제2항에서는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침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 사실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임. 다만 가중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

- (질문 7) 사이버렉카 A씨는 게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이어야 함.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질문 8) 홍길동씨는 연예인으로서 공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중 손해배상 소 청구가 법에서 금지하는 소위 '입틀막 소송(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것 아닌가?

⇒ 공인의 범위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아래 규정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①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④ 「인사청문회법」 상 공직 후보자 ⑤ 「정당법」 상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법」 상 언론사의 대표자 ⑦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질문 8-1) 만약 홍길동씨가 공인이라면 가중 손해배상의 소 제기가 불가한 것인가?

⇒ 가중 손해배상의 소 청구인의 자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인 역시 소송 제기가 가능함. 다만, 공인이 청구한 소에 적용되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특칙(개정 망법 제44조의11)을 마련하여 공익적 표현의 영역을 확정하면서 정당한 비판자를 소송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했음. 만약, 피고(게재자, A씨)가 해당 소의 제기가 공인에 의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60일 이내 선고를 통해 소 각하를 판결한다면 원고(공인)는 피고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소 각하 사실에 대해 공표할 의무가 있음.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의 소송 대응 절차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

- (질문 9) 법원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라고 판결한 정보를 반복하여 게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사례3.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 >

D씨는 장애인인 E씨를 특정하여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직장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모두 고용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이므로 함께 생활하거나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하였다. 해당 정보는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E씨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특정 지역 출신 국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 (질문 10)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혐오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신고 시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신고 사유,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질문 10-1) 혐오표현으로 신고를 받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제공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신고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질문 10-2) 혐오표현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제공자는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고, 삭제·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음

- (질문 10-4)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에 대한 삭제·차단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질문 10-5)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보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질문 10-6) 법원에서 혐오표현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법원에서 불법정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판결, 유죄판결 등을 받은 정보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 (질문 10-7)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혐오표현으로 규제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음.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다양한 의견표명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됨. 또한 개별 게시물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누군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오해 바로잡기

질문1.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함

질문2. 환경문제를 취재해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논란이 되면 언론사가 가중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가중 손해배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송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임

질문3. 신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되면 언론사도 책임을 지나요?

⇒ 언론사도 게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정보,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등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손해배상 및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아울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질문4.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누군가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플랫폼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 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악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정보 게재자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음

질문5. 구독자 15만 명으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가 영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 네. 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중에서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

질문6. 구독자 15만 명인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해서 올리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나요?

⇒ 네. 됩니다. 정보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3회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가 이미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참고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와 과징금 대상자 구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인 게재자	과징금 대상인 게재자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구독자 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조회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정보게재 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 해당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정보)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질문7.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따라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상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 정부는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은 하지만 사실확인 주제선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참고 : 투명성센터와 사실확인 단체 역할>

구분	투명성센터	사실확인 단체
법령 근거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주요 임무	○ <u>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u> ※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되,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는 않음	○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
주요 역할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검증한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

질문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경우,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때 유튜버, SNS 채널 게재자 등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언론사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등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 인터넷 기사도 시행령상 게재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9.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 제3항 제1호부터 5호까지는 언론사 운영 SNS 채널 게시물 역시 예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포함 여지 있는지?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함

구분	법 시행전	법 시행후
정부	<방미심위 심의 및 자율규제 협조 요청> ① 방미심위를 통한 유해정보/권리침해정보 - 심의 신청→심의 결정→시정권고→사업자 미이행 →방미통위 결정→시정명령→사업자 미이행 →고발 및 벌금 ※ 허위조작정보 개념 부재로 정부의 제재조치 불가 ② 혐오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미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 * 제8조 제3호 바목.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과징금 등 제재조치> ① 허위조작정보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 ②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재자에 대한 최대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허위조작정보 정의 신설(망법 제44조의7제2항)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포섭 ③ 혐오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망법 제44조의7제1항2의2) ※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통위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포털·플랫폼 자율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 신고 ②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삭제·차단 등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① 플랫폼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 신고(영상URL, 이유/근거, 연락처 등 필수 기재) ② 플랫폼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 ③ 플랫폼 정책*에 따라 조치를 해야함 *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및 신고, 조치 등에 관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 ④ ③의 조치 결과와 이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 통지 ⑤ ③의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가능 (6개월내) ⑥ ③, ⑤의 결정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분쟁조정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조정 대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 ②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분쟁조정부> ① (조정 대상) (1)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2)③의 조치 결과 및 ⑤의 결정 ②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 플랫폼 사업자에 분쟁조정 혹은 민형사 소 제기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가능 - 정보 제공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법원)	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일반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통한 구제 가능	①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 손해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 배상 ② 규모있는 게재자에 의한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피해일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액 청구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1.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법'이라는 주장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λεκ카 방지법'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2.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3.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게시글도 감시받고 고발될 수 있다는 주장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4.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

혐오표현은 법률에서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게시물은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과
방미심위 심의를 통해 표현의 내용·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5.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주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망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반복 게재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원에 의하여 불법,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6. 정부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떠안는다는 주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에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정부의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떠안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 바로잡기

7.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한다는 주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 등을 강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